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검사 규칙(E-1 규칙) 및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법령 상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을 마련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용량별로 다르게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1개의 증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17.9.8. 발효)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관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법령 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교육은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선박직원만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비 선박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정기 또는 임시검사 준비기준 추가(안 별표 9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검사규칙(E-1 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검사 시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험운전을 준비하도록 기준 추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 마련(안 별표 12, 14, 14의3, 15 및 15의2 개정)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 의결, '21.2.22)」에 따라 형식승인 취소,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독립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에 대해 위반 차수 적용 규정 마련

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부속서 1(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개정에 따라 교환, 처리방법 외 다른 평형수관리방법을 적용한 경우 기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각주에 표시된 결의서 번호를 현행화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같은 형식임에도 각 용량에 따른 모델별로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 항목을 재배치하였으며 현행 형식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안 제2조제1호 등 182개 용어 정비)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한자와 병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 2월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4) 법제처 심사 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완료일로”를 “완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충용적”을 “충용적(容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처리물질”로, “육상 시험”을 “육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법”을 “① 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레크리에이션”을 “여가활동”으로 한다.

제5조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오염 사고”를 “오염사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호 본문 중 “기선”를 “기선(基線)”으로, “수심”을 “수심(水深)”으로 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군체”를 “군체(群體)”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끝난 때에는”을 “끝나면”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해사기구와”를 “국제해사기구”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끝난 때에는”을 “끝나면”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족하였다고”를 “충족했다고”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선박소유자는”을 “① 선박소유자는”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을 “지정교육기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박평형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교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나목 중 “잔량”을 “남은 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한”을 “인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자력항해능력)”을 “선박[자력으로 항해할 능력]”으로, “무인부선”을 “무인부선(無人艇船)”으로,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적도”를 “용적도(容積圖)”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측심관”을 “측심관(測深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종단면도”를 “종단면도(縱斷面圖)”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면이”를 “도면의 승인 여부를”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결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에 대하여”를 “선박의”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서란(裏書欄)”을 “배서란(背書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할 수 있고”를 “않을 수 있고”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수리와 관계있는”을 “수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칠”을 “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장하여야”를 “연장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항”을 “회항(回航)”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하였을”을 “연장한”으로 한다.

제28조제4호가목 중 “말한다)한”을 “말한다) 중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산하는”을 “계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형처리설비”를 “동형(同型)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전단 중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시험기관에 대해”를 “시험기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

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적합한지 여부를”을 “적합한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차”를 “임차(賃借)”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각각 “고시해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정한지 여부”를 “적절한지”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하려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7조의7제4항 중 “자문위원회에게는”을 “자문위원회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았을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에 대해서”를 “절차”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교부받”을 “발급받”으로, “날로”를 “날”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를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수거확인증 발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병에 의하여”를 “합병으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려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검사관은”을 “선박검사관이”로, “하려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한국선주협회”를 “한국해운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0조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3조제3호나목 중 “대한 선박”을 “대한”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하려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별표 9에 정기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성능 등 검증을 위한 시험운전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가목 전단 중 “유형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표 15의2 제1호가목 전단 중 “유형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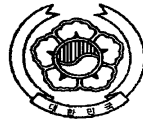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이후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가 완료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으로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 승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이 발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번호 IMO Number*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_____

선박평형수 용량(m³)

Ballast Water Capacity(in cubic meters): _____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의 상세 설명

Details of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used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Method of Ballast Water Management used: _____

설치일

Date installed(if applicable): _____

제조업체

Name of manufacturer(if applicable): _____

선박에 적용된 주요 선박평형수관리방법은

The principal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employed on this ship is/are:

☐ 제D-1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1

☐ 제D-2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2

(설명)

(describe) _____

☐ 선박은 제D-4규칙에 적용된다.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D-4.

☐ _____의 규칙에 따른 다른 관리 방법

other approach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_____

* 결의안 A.1117(30)에 따라 기구에서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체계(개정내용 포함)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as may be amend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의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2. 해당 선박의 검사 결과 이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는 이 협약 부속서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at the survey shows that Ballast Water Management on the ship complies with the Annex to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_____ 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일(dd/mm/yyyy):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dd/mm/yyyy):

증서발급 장소

Issued at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 (한글 및 영문)

제1종/제2종 중간검사를 위한 배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E-1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2종 중간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2종 /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2종 /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2종 중간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E-5.8.3규칙에 따른 제2종/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8.3규칙에서 요구하는 제2종/제1종* 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E-5.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배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EN 5 YEARS WHERE REGULATION E-5.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3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with E-5.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E-5.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배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E-5.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협약의 부속서 제E-5.4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E-5.5규칙이나 제E-5.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항구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배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E-5.5 OR E-5.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5.5규칙과 제E-5.6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5. of E-5.6*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E-5.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2종 중간검사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배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E-5.8 APPLIES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_____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_____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승인 규칙」 [결의서 MEPC.300(72)]에 포함된 상세 요건에 따라서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검사/시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 증서는 아래에 기재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listed below has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Code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resolution MEPC.300(72)).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referred to below.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명칭

Nam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manufactured by _____

형식 및 모델

날짜

Under type and model designation(s) and incorporating: _____ date: _____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그 밖의 장비의 제조자

Other equipment manufactured by _____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날짜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date: _____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m³/h): _____

이 형식승인서의 사본은 선박검사를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선박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만일, 형식승인서가 타 주관청의 승인에 기초해서 발행되었다면 그 형식승인증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Type Approval Certificate, shall be carried on board a ship fitted with thi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for inspection on board the ship. If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is issued based on approval by another Administration, reference to that Type Approval Certificate shall be made.

운전제한조건은 이 증서 추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Limiting Operating Conditions imposed are described in this document.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_____

주관청

Administration of _____

증서발급일

Issued _____

증서유효일

Valid until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추록
SUPPLEMENT TO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승 인 번 호
 Certificate No. _____

A. 승인 내용(Approval Condition)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처리방식
 Treatment Sequenc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 평형수 주입(Ballast water uptake):
- 평형수 배출(Ballast water discharge):

2. 처리물질의 종류
 The Active Substance _____

3. 중화제의 종류
 Substance for Neutralization of the Active Substance: _____

4.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Equipment / Assembly Drawing No.

도면종류	도면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
운전, 유지보수 및 안전 매뉴얼(OMSM)			
배관 도면(P&ID)			
장비배치 도면(General Arrangement Drawing)			
구성품 도면(Component Drawing)			
전기 도면(Electrical Drawing)			

5. 모델 구성 및 정격처리용량
 Model Designations and Treatment Rated Capacity

모델명 (Model)	정격처리용량 (TRC)(m ³ /h)	주요 구성품 (Major Components)	

6. 승인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성품 목록
 Components list of BWMS approved

7. 소프트웨어 버전(Software Version): _____

8 이 장비의 제조공장은 다음과 같음
 The place of production is as following: _____

B. 운전제한 조건(Limiting Operating Conditions)

본장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his equipment has been designed for operation in the following conditions

9. 운전 제한 조건(Limiting Operating Conditions)

9.1 온도 및 염분제한

Temperature / Salinity: _____

9.2 처리물질의 최대 사용량(또는 자외선 방식의 경우 최대 조사량)

Max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aximum radiation dosage: _____

9.3 처리물질의 최저 사용량(또는 자외선 방식의 경우 최저 조사량)

Min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inimum radiation dosage: _____

9.4 배출시 최대 TR0 농도(또는 자외선 방식의 경우 배출시 조사량 허용범위)

Maximum Allowable Discharge Concentration of TR0*/Permitted range of radiation dosage at discharge: _____

9.5 그 밖의 사용물질(해당시만)

Substances for any other use: _____

9.6 육상시험 시 선박평형수 처리 후 배출하기 위해 적용된 유지시간

Applied holding time during land-based testing to discharge ballast water after treatment:
(Marine Water: / Fresh water: / Brackish water:)

9.7 최대허용압력(Maximum system operation pressure): _____

10. 주요 구성품별 운전제한 요건

Main Components System Design Limitation

10.1 필터 (Filtration Unit): _____

10.2 전해장치 (Electrolysis unit): _____

10.3 자외선살균장치 (UV Unit): _____

10.4 기타 구성품(Other components): _____

11. 기타사항(others)

C. 육·선상 시험결과(Land-based test and ship-based test results)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결과와 환경시험 및 육상·선상시험의 세부사항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승인 규칙」 [결의서 MEPC.300(72)]에 따라서 수행된 것입니다.

Test results and details of environmental testing, land-based testing and shipboard testing conducted on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Code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resolution MEPC.300(72))

12. 육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based test results

12.1 시험을 수행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_____

12.2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_____

12.3 시험시 온도 및 염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12.4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based test results

12.4.1 해수

Marine water: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총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2.4.2 기수

Brackish water: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총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2.4.3 담수

Fresh water: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2.4.4 최소유지시간에 따른 시험결과(최소유지시간:)

Testing results at minimum holding time specified by BWMS manufacturer(holding time:)

시험결과 Test results	육상시험 (Land-based testing)					
	해수 (marine)		기수 (brackish)		담수 (fresh)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3. 선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based test results

13.1 시험을 수행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_____

13.2 시험장소

Place of test: _____

13.3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_____

13.4 시험시 온도 및 염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13.5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 based test results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3.6 물리화학 및 수질 조건

Physical and water quality conditions

변수 (Parameter)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염분 Salinity (PSU)						
온도 Water temp. ($^{\circ}\text{C}$)						
총부유물질량 Total Suspended Solids (TSS) (mg/L)						
입자성 유기탄소량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mg/L)						

14. 재성장시험 결과

Testing results for regrowth

시험결과 Test results	육상시험 (Land-based testing)						선상시험 (shipboard testing)		추가 실험실 규모 시험 (Additional bench-scale testing)			
	해수 (marine)		기수 (brackish)		담수 (fresh)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3회 3rd	4회 4th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Vibrio cholerae (01, 0139) (cfu/100mL)												

15. 변경사항(_____)에 따른 육·선상 추가 시험 결과

Additional land-based test or ship-based test results with _____

D. 비고(Remark)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주관청

Administration of

증서발급일

Issued

증서유효일

Valid until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1. ----- ----- ----- ----- ----- ----- ----- ----- 완료일-----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6. ----- ----- ----- ----- 총용적(容積)--.
7. “기본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실험	7.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실 규모(lab - scale)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예비승인을 말한다.

8. “최종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육상시험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리트(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

[illegible]

8. ----- 처리물질-----

----- 육상
시험 -----

-----.

9.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소형 선박) ① 법 -----

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 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생 략)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제5조(면제·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여가활동 -----

제5조(면제·완화 신청 서류) ---

----- 않거 -----

----- 제출해야 -----
-----.

제6조(긴급한 사정) -----

-----.

1. (현행과 같음)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
이 필요한 경우

3. (생 략)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
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
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
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
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
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
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
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
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
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
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
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

2. ----- 오염사고-----

3. (현행과 같음)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
항 보고) ①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수역) -----

1. -----

-----기선(基線)-----

----- 수심
(水深)-----.

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2. (생 략)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생물(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 일 것

가. 최소크기(여러 개체가 모여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단위 개체의 길이를 말하며, 그 외의 생물은 생물의 척추, 편모 또는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하고 몸통의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

-----.

1. -----

가. -----

- 군체(群體)-----

서 같다)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세제곱미터당 10개체

나. (생 략)

2. (생 략)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

---- 평가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
----- 끝나면 -----

----- 협의해야 -----.

③ -----

----- 국제해사기구-----

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 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

-----.

④ -----
----- 끝나면 -----

----- 고시해야 -----
--.

1. ~ 6. (현행과 같음)

⑤ -----

----- 통보해야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

----- 제출해야 -----.

② -----

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포함해야

1. ~ 6. (현행과 같음)

③

충족했다고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에게-----

-----신청해야-----
-----.

② -----

-----발급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략)

2. 개발·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
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
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
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
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
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③ (생략)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
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
다.

제18조(직원의 교육) ① 선박소유
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
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
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

1. (현행과 같음)

2. -----

않은 ----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

----- 제
출해야 ----.

② -----

----- 인정하면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한 사항은 -----
--.

제18조(직원의 교육) ① 선박소유
자는 -----

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에게-----

----- 실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지정교육기관에게 -----

-----.

③ 선박평형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교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포함 -----
-----해야 -----.

1. ~ 5. (생략)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략)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생략)

나. 배출량 및 잔량

다.·라. (생략)

4. (생략)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가. ~ 마. (생략)

6. (생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남은 양

다.·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인해

가. ~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

-----[자력으로 항해
할 능력-----
----- 무인부선(無人艇
船)----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

③ (생 략)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4. ~ 6. (생 략)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

----- 제
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용적도(容積圖)
3. ----- 측심관(測深管)-----
4. ~ 6. (현행과 같음)
7. ----- 종단면도(縱斷面圖)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면의 승인 여부를
----- 결정-----

---- 해야 -----.

제22조(정기검사) ① -----

----- 선박의 -----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제출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9호서식 -----
----- 발급해야 -----
--.

제23조(중간검사) ① -----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으면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배서란(背書欄) -----

-----.

⑥ -----

----- 않을 수 있

고 -----

----- 않을 수 있다.

제24조(임시검사) ①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
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
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
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수리에 관한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줄 -----

③ -----

----- 결정해야 -----.

④ -----

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 않을 -----.

제25조(검사의 준비) -----

----- 해야 -----.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

----- 연장

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3. -----

----- 회항(回航) -----

----- 않는 -----

② -----

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
어야 한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
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
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 3. (생략)

4.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끝
난 경우에는 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 한다.

가. 선박이 계선(繫船)(「선박
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

----- 제출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연장한 -----

-----.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
산)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유효기간 만
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
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
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
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
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
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
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
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
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

--- 말한다) 중인 -----

나. -----

----- 계산

하는 -----

1) -----

- 않은 -----

2) -----

- 않은 -----

5. (현행과 같음)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

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
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
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
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
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
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
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
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
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
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
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
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
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 제
출해야 ----.

② -----

----- 실시해야 -----.

----- 수행해야 -----.

1. 2. (현행과 같음)

3. 동형(同型)처리설비-----

③ -----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
· 면제) ① (생략)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

----- 제출해야 -----.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
·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보내고 ----

----- 동등한 수준 -----

----- 인정하면 -----

시험기관에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

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2. (생략)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생략)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제출해야 한다.

② 받은 면

1. 2. (현행과 같음)

3. 않는

4. (현행과 같음)

③ 제출해야 않는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3조(검정) ① 법 제17조제7항
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
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
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
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
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
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
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첨부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정) ① -----

----- 제출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받으면 -----

--- 적합한지 -----

--- 해야 -----.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1. 2.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증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
식증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은 형식증인서의 갱신을 신청
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
식증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신된 형식증인서의 유효기
간은 기존 형식증인서의 유효기
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한다.

제34조(형식증인 취소 등의 처분
기준)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하여야 한다.

제36조(형식증인시험기관 지정 신
청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
라 형식증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형식증인시험기관 지정

----- 신청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하면 -----

-----.
-----.

③ -----

----- 계산
한다.

제34조(형식증인 취소 등의 처분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했을 ----- 고시
해야 -----.

제36조(형식증인시험기관 지정 신
청 등) ①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 라.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6. ----

----- 임차(賃借)-----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해야 ----.

③ ----

----- 고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고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③ -----

----- 적절한지 -----
한지-----

----- 통보해야 ----

④ -----

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 제출해야 -----
--. -----

---.

⑤ -----

----- 인정하면 -----

----- 제출해야 -----.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 않는 -----

----- 않는다 -----

----- 제출해야 -----.

-----.

1. (현행과 같음)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 등의 -----

② -----

----- 인정하면 -----
-----.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

----- 제출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 않는 -----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 2.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illegible][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⑤ -----

----- 공고해

야 ----.

1. ~ 4. (생략)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1.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고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문위원에게

-----.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

----- 제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해야
-----.

③ -----
----- 받으면 -----

----- 결정해야 -----.

④ -----
----- 했을 -----

----- 공고해야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출해야 -----.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

⑦ -----
절차-----
 ----. -----

 -----.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

 ----- 처리해야 -----.

1. 2. (현행과 같음)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

 ----- 제출해야 -----.

② -----

 ----- 보관해

여야 한다.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
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
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
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
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
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6. (생략)

② (생략)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
· 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
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야 ----.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받-----
----- 날-----
보관해야 ----.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사람은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수거확인증 발급-----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
· 의무 승계신고) ① -----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생
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항만국통제)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합병
으로 -----

----- 확인해야
-----.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
과 같음)

② -----

---- 했을 -----
-- 공고해야 -----.

제44조(항만국통제) ① -----

-----.

1. -----

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
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3.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
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
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
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안
니한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
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
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
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
한다.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
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않은 -----

2. -----

----- 않은 -----

3. -----

----- 않
은 -----

② -----

----- 하려면 -----

----- 발급해야 -----

---. -----

----.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 -----

선박검사관이 -----

----- 하려면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필요한 -----

-----.

제46조(이의신청) ① 법 제28조제 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7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1. 1의2. (생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

제46조(이의신청) ①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정하는 -----

----- 철회해야 ----.

제47조(공표) ①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 한국해운협회 -----

제52조(조사·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 (생략)

3. 「검역법」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역 결과

가. (생략)

나. 선박평형수에 대한 선박가검물(可檢物) 검사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제52조(조사·연구 결과의 보고)

 --- 보고해야 ----. -----

 -----.

제53조(정보의 제공) -----

 --.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대한 -----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
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
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확인해야

않는

해야

한다.

③ _____

_____ 인정하면

_____ 발급해야

_____.

④ -----
 --- 변경하려면 ---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2.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
 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5조(수수료 등) ①·② (생
 략)

 ----- 제출해야 -----
 ---. -----

 -----.

1. 2. (현행과 같음)

⑤ -----

 ----- 공고해
 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공고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55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생략)

③ -----

--- 상응하는 -----
--.

④ (현행과 같음)